

화순군의회

수신 : 의장

1995. 7.

제 목 :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

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수정안을
발의합니다.

발의자 : 흥이식 의원 외 2명

(서명 날인서 : 별첨)

첨부 : 1.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
2. 서명날인서 1부. 끝.

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번 호	
---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1995. 7.

제 안 자 : 홍이식 의원 외 4인

1. 수정이유

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참여 폭을 보다 더 확대, 민의를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의회의원 5명으로 하고, 회의소집에 있어 군수나 위원장만이 소집할 수 있다고 함은 활발한 의견 개진이나 토론을 가로막을 수 있는 저해요소가 되므로,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한 의사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집요구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위원의 구성에 있어 의회의 참여폭을 확대키 위해 "화순군의회 의원과" 를 "화순군의회 의원 5인과"로 수정 (안 제2조 제3항)
- 회의소집 요구를 군수나 위원장만이 아닌 재적위원도 3분의 1 이상이면 소집 할 수 있도록 소집요구의 범위를 확대 수정함. (안 제6조 제1항)

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(구성) 제3항중 " 위원은 화순군의회 의원과 " 를 " 위원은 화순군의회 의원 5인과 " 로 한다.

제6조 (회의) 제1항중 "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" 를 "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"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2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. . . (생략)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. . . (생 략) . . . 된다</p> <p>③ 위원은 <u>화순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</u>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(생 략) 한다.</p> <p>④ 위촉위원의 . . . (생 략) 있다.</p> <p>제6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<u>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</u>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. . . (생 략) 본다</p>	<p>제2조 (구성) ① 원안과 같음</p> <p>② 원안과 같음</p> <p>③ 위원은 <u>화순군의회 의원 5인과</u></p> <p>④ 원안과 같음</p> <p>제6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 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</p> <p>② 원안과 같음</p>

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

의 번 호	
---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1995. 7.

제출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이유

-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따른 민간자본유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으로 지역개발과 군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기여코자 함.

2. 제정근거

-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

3. 주요골자

가. 목적(안제1조) :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

나. 구성(안제2조) : 위원장(부군수)1인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(군의회의원, 관계공무원,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)

다. 기능(안제4조)

- 1)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
- 2)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3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
- 4)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
- 5)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라. 회의(안제6조)

- 위원회의 회의를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위원장이 소집

마. 간사등(안제7조)

- 간사는 예산계장이 되고,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

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.
- ③ 위원은 화순군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화순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.
-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(실무위원회)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.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
4.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
5.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7조(간사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예산계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.

제8조(의견청취)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,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심의요구) 각 실과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회의록)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수당및여비)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검 토 보 고 서

□ 조례명

-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(안)

□ 주요내용

1. 목 적(안 제 1조) :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 7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화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
2. 구 성(안 제 2조) : 위원장(부군수) 1인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
(의회 의원 5명, 관계공무원,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 교수 등)
3. 기 능(안 제 4조)
 -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
 -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-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
 -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4. 회 의(안 제 6조) :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

□ 제정사유(필요성)

-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따른 민간 자본 유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,
- 화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으로 지역개발 활성화로 군민 생활의 편익증진 도모

□ 검토결과(의견)

- 본 조례(안)은 도로부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(안)이 시달되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코자 하는 (안)으로,
- 상위법령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 7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 제 7항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